



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 사건

【결정사안】

지복동(池卜同, 1914.3.3.~1945.6.19.)이 1944~45년경 조선중공업에 출근하던 중 행방불명된 후, 1945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던 바, 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복동이 1944~45년경 행방불명된 이유와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어 1945년 6월 19일 사망한 이유를 규명할 수 없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1944~45년의 부산형무소 재소자인명부, 1945년 부산형무소 종결신분장보존부, 부산형무소 수용자신분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검사국 발행 집행원부를 검색하였으나, 지복동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이유와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지복동의 행방불명이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40년 4월 조선중공업 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했다는 자료는 찾았으나, 자료에 파업참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복동이 참가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그리고, 1940년 4월 이후에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복동의 행방불명 사유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관련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지복동의 행방불명 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3. 또한, 신청인 외에 본 사건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없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4. 이상과 같이 본 사건은 지복동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신청인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전 문】

【사 건】 가-107 지복동의 일제시기 행방불명 후 사망 사건

【신청인】 지박일

【결정일】 2007. 5. 29.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 불능 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신청인 지박일은 숙부 지복동(池卜同, 1914.3.3.~1945.6.19.)이 1944~45년경 행방불명된 후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던 바, 신청사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복동은 1944~45년경 부산에 소재한 조선중공업¹⁾에 출근하던 중 행방불명되었는데, 그 즈음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 진행 중이었고 지복동도 그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1945년 7월 30일, 부산형무소 소장은 지복동이 부산형무소²⁾에서 사망한 사실(사망일:1945.6.19)을 통보했고, 이에 가족들은 부산시 서구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있던 지복동의 시신을 인수한 후 화장했다고 한다.

II. 진실규명 과제

첫째,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이유와 사망한 이유.

둘째, 1940년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파업이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셋째, 지복동이 행방불명된 사유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연관됐는지 여부.

1) 조선중공업은 1937년 7월 부산 영도에 설립된 자본금 300만원의 조선(造船)회사이다. 1941년 말경에는 자본금 700만원, 선박 건조능력 연간 20,000톤, 수리능력 연간 300,000톤의 설비능력을 갖추었는데, 이처럼 1000톤 이상의 대형 강선(鋼船)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근대식 조선소의 설립은 조선중공업이 처음이었다. 조선중공업은 해방 후 귀속기업체로 관리되다가 1950년 대한조선공사로 국영기업이 되었다가 이후 1980년대 말 한진그룹이 인수하여 현재의 한진중공업이 되었다. 배석만, 「조선중공업주식회사 경영 자료의 내용과 성격」, 『항도부산』제20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4, 3쪽.

2) 현재의 부산구치소는 1906년 부산감옥으로 개칭된 후, 1923년부터 부산형무소로 개칭되어 1961년까지 사용되다가 1961년 부산교도소로, 1986년에는 부산구치소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산구치소 홈페이지 내 기관소개 참고.



III. 진실규명의 목적과 근거

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진실규명의 범위 중 하나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이유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진실규명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 또한 지복동이 1944~45년경 행방불명된 이유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관련되었는지와 나아가 그것이 항일독립운동과 연관되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하여 본 사건을 사전조사를 거쳐 2006년 10월 30일 조사개시 결정하였다.

IV. 조사 방법과 경과

본 사건의 조사는 선행연구 검토 및 문헌자료 검색, 관련기관 자료 검색, 전문가 자문, 그리고 신청인 진술조사를 병행하였다.³⁾

1. 문헌자료 조사

가.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문헌자료 검색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공훈사료관,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 1944년~45년에 발간된 『부산일보』에서 관련 기사 검색
- 『소화 15년 전반기 조선 사상운동 개황』⁴⁾ 중 노동운동 부분 분석
- 『항도부산』(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검색

나. 관련기관 자료 검색 및 요청

- 국가기록원 자료 검색
 - 자료요청 공문 발송⁵⁾
 - 1944~1945년의 부산형무소(현 부산구치소) 재소자인명부, 1945년 부산형무소 중결신분장 보존부, 부산형무소 수용자신분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검

3) 사건조사 일지.

4) 朝鮮軍 參謀部, 『昭和 15年 前半期 朝鮮思想運動 概況』, 1940.8.

5) 2006.7.21. 국가기록원에 자료요청 공문발송, 2006.8.30.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회신공문 도착.

사국 발행 집행원부 열람·검색⁶⁾

- 부산시 서구청 호적과에 지복동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사항 문의⁷⁾
- 한진중공업에 지복동의 재직·경력기록 요청⁸⁾

2. 전문가 면담

일제시기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 조선중공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 배석만, 김경남에게 자문을 구하였다.⁹⁾

- 배석만 박사(도쿄대 연구원)¹⁰⁾
- 김경남 박사(도쿄대 연구원)¹¹⁾

3. 진술 청취

- 신청인 지박일과 전화통화¹²⁾ 및 면담조사¹³⁾

V. 조사결과

1.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이유와 사망한 이유

지복동의 제적등본에 '1945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이유와 사망한 이유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지복동의 제적등본에는 지복동이 1945년 6월 19일 3시에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부산 서구청 호적과에 문의한 결과, 형무소에서 사람이 죽으면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형무소장이 형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증명서, 시신매장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고 한다. 그 후, 신고를 받은 관할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는 사망사실을 제적등본에 기재하고, 사망관련 증빙서류는 관할 법원에 넘긴다고 한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문서보존기한에

6) 출장보고서.(2007.4.4~5. 대전 국가기록원)

7) 2006.9.6. 부산시 서구청 호적과에 문의.(전화통화)

8) 2006.7.24. 한진중공업에 자료요청 공문발송, 2006.8.30.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회신공문 도착.

9) 배석만, 김경남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전화와 e-mail을 통해 자문을 구하였다.

10) 전문가 면담내용 요약서.(배석만, 2006.8.30.)

11) 전문가 면담내용 요약서.(김경남, 2006.8.28.)

12) 2006.7.5, 2006.7.21. 전화통화.

13) 신청인 지박일 진술조서 요약 및 진술조서.(2006.11.14.)



따라 10년을 전후하여 출생·사망 관련 자료를 폐기한다고 한다. 담당 직원은 지복동의 사망사실이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문서보존기한이 10년을 넘었기 때문에 지복동의 사망 관련 증빙서류는 소멸됐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지복동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 지복동의 행방불명 시기¹⁴⁾로 추정되는 1944~45년의 부산형무소(현 부산구치소) 재소자인명부, 1945년 부산형무소 종결신분장 보존부, 부산형무소 수용자 신분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검사국 발행 집행원부를 열람·검색하였다. 그러나, 부산형무소 재소자인명부·종결신분장보존부에 ‘지복동’이라는 사람은 없었고, 부산지방법원 판결문과 부산지방법원검사국 발행 집행원부는 1945년 8월 이후부터의 자료여서 지복동에 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었다.¹⁵⁾

2. 1940년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 발생과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과의 관계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지복동이 행방불명됐던 당시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다고 하며 지복동이 그 파업에 참가했었다고 한다. 이에, 1940년대 조선중공업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파업이 발생했다면 그 파업이 1940년대 부산지역 항일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1940년 4월 조선중공업 노동자 20명은 물가 대비 임금 불균등에 의한 생활 곤란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일으켰다. 회사 측은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 고려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파업은 이를 만에 종결되었다.¹⁶⁾

현재 이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의 신상정보 및 발생과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자세한 파업의 성격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파업이 소수의 노동자에 의해 발생한 점, 회사와의 협상 후 짧은 시일 내에 끝난 점, 노동자의 요구사항이 임금인상에 그친 점, 그리고 이후 다른 노동자 파업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파업은 당시 부산지역 항일운동가 혹은 항일조직의 지도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¹⁷⁾

14) 지복동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지복동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인 딸은 1942년 2월 28일에, 둘째인 아들은 1944년 9월 15일 출생하였다. 그리고, 제적등본에는 지복동이 1944년 9월 22일 둘째의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지복동이 행방불명됐으리라 추정되는 시기는 1944년 9월 22일 이후로 보인다.

15)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 직원에 의하면, 1945년 일본이 퇴각할 때 부산에서 많은 자료를 불태우고 갔는데, 그 중 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법원의 자료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16) 조선군 참모부, 『소화 15년 전반기 조선사상운동 개황』, 1940.8, 748쪽.

17) 이에 대해 배석만은 1940년대 조선중공업 노동자가 2,000~2,500명 정도였으므로 『소화 15년 전반기 조선 사상운동 개황』의 1940년에 발생한 조선중공업 노동자 20명의 파업을 대규모 파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1940년대 부산에서 부산항일학생운동(노다이 사건)과 조선청년독립당, 순국당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일적인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외에는 노동운동 및 노동운동과 연관되는 항일운동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 항일운동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3. 지복동의 행방불명 이유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의 연관성

지복동이 조선중공업에 출근하던 중 행방불명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지복동이 조선중공업에 근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진중공업에 지복동의 재직·경력기록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진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직원기록은 1960년부터이며, 일제시기의 직원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하여 지복동의 재직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1940년 4월 조선중공업 노동자 20명이 파업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20명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지복동이 이 파업에 참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파업은 1940년 4월에 발생한 것으로 지복동이 행방불명되었으리라 추정되는 시기인 1944년 9월 이후부터와는 시간차가 커 이 파업으로 인해 지복동이 행방불명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1940년 4월 이후부터 해방 이전까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제시기에 발행된 신문을 검색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1940년부터 발간되지 않아 검색이 불가능하였고, 『부산일보』는 1943년부터 1945년 사이의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하지만, 1943~45년 사이에 발간된 『부산일보』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1944년 1~3월이 전부이며, 기사내용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고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나 부산지역의 항일적인 움직임 등에 대한 내용의 기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지복동의 행방불명이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연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VI. 결론

본 사건은 지복동이 1944~1945년경 조선중공업에 출근하던 중 행방불명되어 1945년 6월 19일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지복동이 행방불명된 이유와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이유, 그리고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원인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본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1944~45년의 부산형무소 재소자인명부, 1945년 부산형무소 종결신분장보존부, 부산형무소



수용자 신분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부산지방법원검사국 발행 집행원부를 검색하였으나, 지복동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지복동이 부산형무소에 수감된 이유와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복동의 행방불명이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40년 4월 조선중공업 노동자의 파업이 발생했다는 자료는 찾았으나, 자료에 파업참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지복동이 참가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1940년 4월 이후에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복동의 행방불명 사유가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과 관련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지복동의 행방불명 사유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확정할 수는 없으나,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은 그 발생빈도가 낮은 점, 참여인원이 소수인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일제시기 조선중공업 노동자 파업은 항일운동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 외에 본 사건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참고인이 없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도 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사건은 지복동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신청인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판단된다.